성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의 안 번 호	

발의년월일 : 2006. 11. .
발 의 자 : 류귀옥 의원외 2인

1. 제안이유

○ 시군의회의 정례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39조, 제41조,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연간 총 회의일수를 80일 이내로 규정하고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(안제2조)

나.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함 (안제3조)

다.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7월 7일,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22일로 함 (안제4조)

라.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,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(안제5조)

3. 개정 조례안 : 붙임

4. 기타 참고사항

가. 입법예고 : 절차생략

나. 예산사항 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 : 집행부 의회관련부서와 협의함

라. 관련법령 : 지방자치법 제38조, 39조, 41조 및
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제명 성주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39조, 제41조,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연간 총회의일수)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8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.

제3조(정례회 개최)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
제4조(집회일) ①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7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·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.
②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2일에 집회한다.
③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.

제5조(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등)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, 기타 의회에 발의·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.

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·의결하며, 기타 의회에 발의·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, 또한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군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.
③임시회에서는 발의·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,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.

제6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·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성주군의회 회의규칙」을 준용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②(경과조치)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 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.